#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0

발의연월일: 2024. 6. 18.

발 의 자:윤상현ㆍ서일준ㆍ김석기

김기현 • 권영세 • 정희용

이헌승 • 박대출 • 김선교

윤영석 • 이종배 • 서지영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본인 및 배우자가 취득가액 1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의 변동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주택 임차인의 피해 방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시급함.

이에 임차인이 임차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소형·저가 주택[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취득당시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

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을 적용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후 주택 취득 시 동일한 감면 자격을 유지해 주고자 하는 것임(안 제36조의 3제3항제6호 신설).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임차인이 임차하여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해 온 주택(아파트는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취득한 경우. 이 경우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며, 취득당시가액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②(생	대한 취득세 감면)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3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6. 임차인이 임차하여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		
	주하는 것을 말한다)해 온 주		
	택(아파트는 제외한다. 이하		
	<u>이 호에서 같다)을 2024년 1</u>		
	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기간 중에 취득한 경우.		
	이 경우 전용면적이 60제곱미		
	터 이하이며, 취득당시가액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		
	인 주택으로서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로 한정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